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

연약

-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제도 개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적연금 제도적 특성을 갖는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검토는 중요함
- OECD 국가의 연금체계는 크게 공적연금 보완형과 대체형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보완형 체계에 가깝다는 점에서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연금개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일본, 독일 등은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공적연금 보완형)으로 고령화 연금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높은 공적연금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소득대체율: 보완형 50.6%, 대체형 18.3%) 재정문제가 심각하므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완형 연금국가의 연금개혁 방향은 공적부문의 경우 부분적 개혁과 근본적 개혁으로, 사적부문의 경우 공적연금을 보완하되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남
 - (공적연금 개혁) 부분적 개혁으로 재정안정화(보험료 인상, 급여 인하) 조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소득보장 강화 정책을, 근본적 개혁으로 전면적 공적연금 개혁(스웨덴 NDC로 전환)과 부분민영화, 그리고 최저보증연금 도입을 추진함
 - (사적연금 활성화) 세제적격 개인연금(리스터연금), 가입범위 확대(전업주부 가입), 준강제화(자동가입제도), 세제혜택 강화(베이비부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함
-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은 고령화 문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연금제도 개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효과적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개혁의 우선순위를 모색해 필요가 있음
 - (연금개혁의 전제 조건) 연금제도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금제도 개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연금개혁의 우선순위 선정) 적절한 연금개혁의 내용일지라도 일시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제도 변경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한지 7년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 연금정책 수립이 중요시됨
 - 우리나라 노후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10년 이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¹⁾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적연금 개혁안과 더불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9%, 급여수준 40%(소득대체율)로 설계되어 구조적으로 수지불균형 상태이며, 이로 인해 기금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빨라져²⁾ 보험료 상향 등 재정문제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등 퇴직급여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³⁾도 2014년부터 제안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금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적연금 제도적 특성을 갖는 OECD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국가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령화 연금정책이 이루어짐
 -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서⁴⁾ 이들 국가의 고령화 대응 연금정책 현황 및 변화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음

1) 공적연금의 성숙기는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 후 약 40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시점인 1999년을 기준으로 보면 21년에 불과함
 2)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3) 세부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참조하기 바람
 4)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비중(42.1%)이 높고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를 띠고 소득비례연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서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로 간주됨

2. 연금체계와 고령화 영향



■ (연금체계 유형) OECD 국가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적연금 역할에 따라 공적연금 보완형(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 대체형(베버리지형)⁵⁾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보완형 체계(비스마르크형)에 가깝음

-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을 통해 충분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는 노후소득보장체계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연금 수준이 낮거나(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 일본 등), 소득비례형 공적연금 중심의 연금체계(미국, 우리나라)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
- 반면 공적연금 대체형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이 최저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빈곤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노후소득보장체계임
 - 동 체계는 소득비례형 보다 기초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운영으로 급여수준이 낮아, 추가적 소득보장(퇴직전 소득보장)은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체계임(영국, 호주, 아일랜드, 스위스 등)

〈표 1〉 OECD 국가의 연금체계 분류

구분	공적연금 보완형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 대체형 (베버리지형)
목적	· 은퇴이전의 생활수준 유지(상대적 생활수준)	· 빈곤완화 및 최저소득보장(절대적 생활수준)
운영형태	사회보험기반의 소득비례연금	정액급여의 기초연금
재원조달	사회보험료	조세
공적연금역할	높음	낮음
사적연금역할	제한적(공적연금 보완)	확대(공적연금 대체)
국가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미국, 한국 등	영국, 호주, 아일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자료: 이용하·정해식(2008),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OECD(2019), 「Pension at a Glance」 등을 참조하여 작성

■ (급여수준)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상대적으로 공적연금 급여수준이 높아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사회경 제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보완형은 50.6%, 대체형은 18.3%로 보완형이 34.8%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5) 비스마르크형과 베버리지형을 결합한 혼합형 연금체계(노르딕형 연금체계)는 비스마르크형의 낮은 보편성문제와 베버리지형의 낮은 급여수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체계였으나, 대부분 소득비례형의 NDC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보완형 연금체계에서는 대체형에 비해 재정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적연금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2〉 OECD 국가의 연금유형별 소득대체를 비교

(단위: %)

국가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	공적연금 대체형		
	평균소득의 0.5배	평균소득자	평균소득의 1.5배		평균소득의 0.5배	평균소득자	평균소득의 1.5배
오스트리아	76.5	76.5	76.5	호주	34.0	-	-
프랑스	60.2	60.1	54.0	아이슬랜드	12.3	3.1	2.1
독일	38.7	38.7	38.7	아일랜드	54.1	27.0	18.0
이탈리아	79.5	79.5	79.5	스위스	32.4	21.4	15.2
일본	42.5	32.0	28.5	영국	43.5	21.7	14.5
한국	55.6	37.3	27.0				
스웨덴	41.6	41.6	30.8				
미국	50.1	39.4	33.1				
소계	55.6	50.6	46.0	소계	35.3	18.3	12.5

주: 평균소득의 0.5배, 1.5배는 평균소득자 소득의 50%, 150%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의미함
 자료: OECD(2019), 「Pension at a Glance」 등을 참조하여 작성

■ (고령화 영향) 보완형 연금체계를 운영하는 OECD 주요국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악화로 인해 일반적인 복지지출 통제와 함께 공사적 연금 개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함⁶⁾

- OECD 국가의 GDP대비 복지지출(공적연금+기타 사회복지) 비중은 1997년 19.0%, 2002년 19.4%, 2009년 2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다소 감소함(2014년 21.6%)⁷⁾
- 이와 더불어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들은 2000년 이후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 등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악화, 세대간의 연금부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간 역할분담 정책을 추진함
 - 일본은 국채를 발행하여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보전할 만큼 고령화는 연금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

3. 고령화 대응 연금정책 사례: 보완형 국가 중심



■ 보완형 국가의 연금개혁 방향을 보면, 공적연금은 부분적(모수적) 혹은 근본적(구조적) 개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6) 이용하(2016), 「OECD 국가의 공·사 연금 개혁동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세미나(2016. 11. 25)
 7) OECD, StatExtracts: 한정수(2015),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국회예산정책처(재인용). 이에 의하면, 2014년 기준 독일 25.8%, 스웨덴 28.1%, 영국 21.7%로 조사되고 있음. 영국은 상대적으로 공적연금 급여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가 복지재정 부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이해됨

과정에서 사적부문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되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남⁸⁾

가. 공적 부문

■ (모수적 개혁)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공적연금제도 내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대부분의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들은 부분적 개혁을 통한 연금정책을 추진함⁹⁾

- (주요내용) 보험료 인상, 연금수급 개시연령 인상, 연금급부의 인하 등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둔 부분적 연금개혁이 이루어짐
 - (보험료 인상) 독일은 2030년까지 보험료를 22%로 상향하고, 일본도 국민/후생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함(후생연금 보험료는 2004년 13.9% →2017년 18.3%)
 - (수급개시연령 인상)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지급개시연령을 상향조정(대부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¹⁰⁾
 - (급여 인하) 독일은 2004년 연금급여를 자동적으로 감축시키는 시스템(자동조정장치)을 도입하였으며(DB → 準DC로 전환), 일본도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준 DC화)으로 급여를 인하함
- (보완대책) 감소된 노후소득에 대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보충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함
 - (사적연금 활성화) 독일은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을 통해 추가적 소득보장은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하도록 유도하였고, 동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해 보조금 정책을 실시함
 - (취약계층 특화형 제도 도입)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독일은 노인·장애인 전용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한계를 보완함

〈표 3〉 모수적 개혁 관련 주요내용 및 보완 정책

구분	내용
주요내용	- (보험료 인상) 독일은 2030년까지 보험료 22%, 일본 후생연금 보험료 2017년 18.3% - (수급개시연령 인상) 대부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이후 70세까지 조정 추진 중 - (급여수준 인하) 독일은 자동조정장치, 일본은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
보완대책	- (사적연금 활성화) 독일은 보조금이 적용되는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 - (취약계층 특화형 제도 도입) 독일은 노인·장애인 전용 기초보장제도를 도입

8) 제3장 고령화와 연금정책 변화는 고령화를 경험한 보완형 국가들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지 등을 정책트렌드 중심으로 검토함. 고령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금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고령화 이외의 요인은 고려대상에서 배제함

9)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2020년 1월 검색), “외국의 연금제도 및 세계의 연금제도”

10) 미국(1984년 개혁, 65세→67세), 독일(2007년 개혁, 65세→67세), 일본(2000년 후생연금 개혁, 60세→65세)

■ (구조적 개혁) 스웨덴, 일본 등은 연금제도의 기본 틀 자체를 변경하는 전면적 개혁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연금정책을 전환함¹⁾

- (주요내용) 공적연금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의 일원화와 부분민영화를 통한 사적연금 역할 강화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함
 - (구조개혁 및 민영화) 1998년 스웨덴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ATP)을 폐지하고 명목확정기여형(No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방식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과 적립식 부가연금(Premium Pension)을 도입함²⁾
 - (제도 일원화) 일본은 2012년 특수직역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과 근로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을 통합(2015년 시행)하여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³⁾
- (보완대책) 구조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소득비례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스웨덴)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강제 사적연금 및 최저보증연금의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소득을 보장함
 - (강제 사적연금 도입) 스웨덴은 강제 사적개인연금인 적립식 부가연금(Premium Pension)을 도입하여 추가적 소득보장을 하도록 제도화하였음
 - (최저보증연금 도입) 또한 소득비례연금과 적립식 부가연금의 급여수준이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면 이를 보충해 주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시행함⁴⁾

〈표 4〉 구조적 개혁 관련 주요내용 및 보완 정책

구분	내용
주요내용	- (구조개혁 및 민영화)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형(NDC)으로 공적연금을 일원화, 강제 사적연금인 적립식 부가연금(Premium Pension) 도입 - (제도 일원화) 일본은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
보완대책	- (강제사적연금 도입) 스웨덴은 적립식 부가연금(Premium Pension) 도입 - (보충급여 제도 도입) 최저보증연금제도 시행

나. 사적 부문

■ (사적연금 추가 도입) 공적연금 급여의 축소로 상대적으로 줄어든 노후소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적격 개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보완할 새로운 사적연금 제도를 도입·시행함⁵⁾

11)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2020년 1월 검색), “외국의 연금제도 및 세계의 연금제도”
 12) 소득의 18.5%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보험료 중 16.0%는 소득비례연금으로, 2.5%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연금계좌에 투입되고 운영함
 13) 일본은 2012년 이후 사회보장비 지출증대에 따른 연금재정악화로 국제발행이 증가하면서 개혁방향을 전면적 개혁중심으로 전환함
 14) 최소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65세 이상의 스웨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중 연금소득이 아주 낮거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독일은 연금개혁으로 인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분을 사적연금을 통해 보전하고자, 2001년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Rente)과 2005년 뤼롭연금¹⁶⁾ 제도를 도입함¹⁷⁾
 - 리스터연금은 저소득·다자녀가구에 대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함
 - 뤼롭연금(Rürup Rente)은 리스터연금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위한 개인연금제도로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2005년에 도입됨

〈표 5〉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제도 비교

구분	독일(Riester)	오스트리아(PZV)	프랑스(PERP)
적립금보증	있음	있음	없음
수급방법	- 85세까지 혹은 종신연금 · 30%까지 일시금 가능	- 종신연금 또는 일시금 · 종신연금: 비과세 · 일시금: 보조금 반환 및 과세	- 종신연금 · 20%까지 일시금 수령가능
가입형태	임의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정부지원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	보조금	소득공제

주: PZV: Prämienbegünstigte Zusatzversicherung, PERP: Plan d'épargne retraite populaire
 자료: <https://schlemann.com/altersvorsorge/riester-rente/riester-pension-english/>; European Union(2017), Study on the feasibility of a European Personal Pension Framework, https://www.caim-int.info/article-E_ECOP_194_0079-the-popular-retirement-savings-plan.htm

-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도 유사한 공적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 개혁방향도 독일과 유사하게 보조금 및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사적연금 제도가 추가로 도입됨
 - 오스트리아 PZV와 프랑스 PERP는 모두 세제혜택(보조금 및 소득공제)을 바탕으로 한 사적연금제도로 종신 혹은 일시금 선택 가능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임
- (사적연금 범위 확대) 추가적 사적연금만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범위 확대, 준강제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
 - (가입범위 확대)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전업주부까지 확대하거나 개인퇴직계좌(IRA)제도의 다양화를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함
 - 일본은 2017년 이후 전업주부까지 개인형 DC에 가입을 허용함과 동시에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하여 사적연금 운용체계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사용함
 - 미국은 전통형 IRA, Roth IRA,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교육 IRA 등 다양한 IRA를 도입함

15) 강성호·류건식(2016),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방향」, 『KiRi Report』, 제395호

16) 김영미(2014),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46: 406-430

17) 독일연방사회노동부(<http://www.bmas.de/DE/Themen/Rente/Zusaetzliche-Altersvorsorge/zusaetzliche-altersvorsorge.html>)

- (가입의 준강제화)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enrollment Scheme)를 운영하여, 가입이 자동으로 된 후 해지는 자율적 의사에 맡기는 식(Opt-out)의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룸
 - 미국은 2009년부터 연금 미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동가입제도를 운영(가입 후 90일 이내 탈퇴가능)하고 캐나다도 퇴직연금 가입 후 60일 이내에 탈퇴 가능하도록 운영함
 - 독일은 2013년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인 시간제근로자의 연금 가입을 확대하였으며,¹⁸⁾ 이탈리아(2007년), 뉴질랜드(2007년) 등도 퇴직연금에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함¹⁹⁾
- (자율적 운용규제)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운용규제를 양적규제에서 질적 규제(Prudent Men Rule)로 전환함에 따라 가입자의 투자운용 선택폭을 대폭 확대함
 - 미·일 등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자산운용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함

〈표 6〉 사적연금 활성화 관련 정책

유형	내용
가입범위 확대	· 미국 등은 퇴직연금 가입허용 범위를 전업주부(비근로자) 등으로 확대 · 자영업자를 고려한 사적연금 운용체계 도입, 다양한 IRA 도입 등
가입의 준강제화	· 자율형 자동가입제도 도입 등 가입방식의 다양화(미국 등)
자율적 운용규제	· 자산운용규제를 질적규제(Prudent Men Rule) 방식으로 전환(미국, 일본 등) - 투자운용의 선택폭 확대

■ (사적연금 세제지원) 세제혜택이 사적연금 가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함

- (과세이연 세제지원) 미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는 EET(Exempt Exempt Tax) 과세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가입을 적극 유도함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근로기간동안 납입 보험료에 대해 비과세하고 은퇴이후 연금소득에 대해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이연효과(EET방식)로 세제혜택이 제공됨
 - 예를 들어 미국의 401(k)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해 18,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등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매우 높음

18) OECD(2019), 「Pensions at a Glance」, p. 92

19) Paklina(2014), "Role of Pension Supervisory Authorities in Automatic Enrolment", IOPS Working Papers on Effective Pensions Supervision, No.22;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표 7〉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

유형	내용
세제 혜택 강화	· EET 과세체계 적용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을 유인(미국 등) -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한 높은 세제혜택 부여
사각지대 지원	· 고령자에 대한 추가납입제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제 지원 등 - 추가적인 소득공제(미국), 중소기업 사업장 세제지원(일본)

-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은퇴직전 세대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추가납입제도(Catch up Plan), 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으로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함
 - 미국은 2002년부터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추가 납부제도를 통해 연간 6,500달러의 추가 세제혜택을 제공해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²⁰⁾
 - 일본은 중소기업들이 퇴직급여제도 도입 시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함

4. 시사점



- (시사점)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연금개혁을 보면, 고령화에 따른 공적부담의 재정부담은 공적연금 내실화(취약계층 지원확대)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상생의 공사연금 개혁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 강화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낮추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공적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볼 때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 개혁이 선행된 후 감소한 노후소득 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공사연금의 상생 정책 방향으로 이해됨
- (연금개혁의 전제 조건) 연금제도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연금제도 개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당겨졌고, 이러한 추세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에 의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되면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제도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칭) 공사적 연금개혁위원회(정치 중립적 기구)를 설립하여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 (연금개혁의 우선순위 선정) 한편, 적절한 연금개혁의 내용일지라도 일시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해 가는 것이 제도 변경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먼저, 보완형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가 중심이므로 공적연금 제도 개혁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적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사적연금 개혁을 수반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머물것인지, 공적연금 대체의 수준으로 사적연금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사적연금 개선 사항) 위 연금개혁 방향성과 병행하여 미시적 측면에서 사적연금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 추가 도입)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이 공적연금을 보완할 새로운 사적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사적연금 범위 확대) 퇴직연금 가입범위를 전업주부까지 확대함으로써 1인 1사적연금을 실현하고,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및 가입의 준강제화를 통해 사적연금 사각지대를 줄여갈 필요는 있음
 - (사적연금 세제지원 강화) 세제혜택이 사적연금 가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kiri**